
I. 서론

1. 연구배경

보험업법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만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를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자는 보험 모집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해야 하며, 모집 자격이 없는 자가 보험 모집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한다(보험업법 제204조 제1항 제2호).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보험업법 제99조 제1항). 보험회사가 이를 위반하여 모집 자격이 없는 자에게 모집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 수입보험료의 50%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3호).

모집종사자의 경우에도 모집 자격이 없는 자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보험업법 제99조 제2항).¹⁾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보험업법 제209조 제1항 제4호, 제5

1)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함

- ① 보험설계사: 같은 보험회사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 ② 보험대리점: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 ③ 보험중개사: 다른 보험중개사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항 제7호 및 제11호), 나아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은 그 위반 금액(무자격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금액)에 따라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표 1-1〉 무자격자에 대한 보험 모집 위탁 및 수수료 지급에 대한 제재 기준

위법·부당 규모 ²⁾		제재양정
개인(금액)	기관(비율)	
10억 원 이상	7% 이상	등록취소
1억 원 이상	4% 이상	업무정지 180일
5,000만 원 이상	3% 이상	업무정지 90일
3,000만 원 이상	2% 이상	업무정지 60일
3,000만 원 미만	2% 미만	업무정지 30일 또는 경고·주의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3〉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 기준”, IV-2

한편 보험업법은 보험 모집의 개념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증대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보험업법 제2조 제12호), 그 구체적인 의미나 범위, 판단 기준에 대해서 별도로 자세하게 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다보니 개별 사안에서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는 보험 모집 행위와, 보험 모집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단순한 소개, 안내, 추천 등의 행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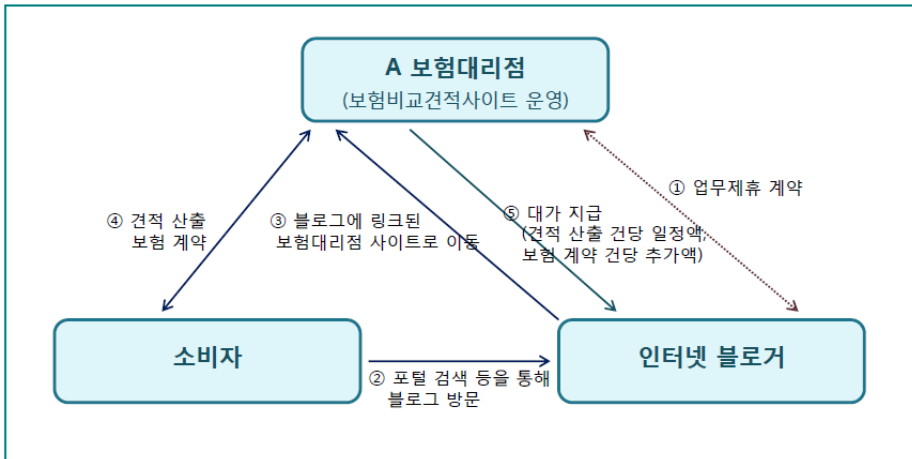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은, 우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가망고객을 찾아내고, 해당 고객과 접촉하여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보험

2) ① ‘개인’은 보험설계사, 개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법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 등 개인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적용하며, ‘기관’은 법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등 모집조직에 대해 적용함
 ② 위법·부당비율=(위법·부당 금액)÷(수입수수료)×100
 ③ 위법·부당 금액은 무자격자에게 지급한 수수료·수당 금액으로 함(영업범위별로 구분함)
 ④ 수입수수료는 검사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영업범위 수입수수료의 누적액으로 함. 다만 검사대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연환산한 금액을 적용하고, 위반기간이 검사대상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함
 ⑤ 영업범위는 보험업법 제31조에 따라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구분함. 다만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제3보험은 생명보험에,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제3보험은 손해보험에 포함하여 산정함

상품의 구체적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청약을 받고, 보험회사가 인수 심사를 하여 승낙을 하고 보험증권을 송부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모두 보험 모집으로 규제해야 하는 것인지, 이 중에서 어떠한 행위가 보험업법상의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어떠한 행위는 보험 모집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 사안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다.

〈그림 I-1〉 인터넷 블로그를 통한 보험비교견적사이트 안내 사례



한 보험대리점이 인터넷 블로거들과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블로거들로 하여금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보험비교견적사이트(해당 보험대리점이 운영하는 사이트임)를 안내하고 링크를 게시하게 하였다. 해당 블로그를 방문한 인터넷 이용자들이 블로그에 게시된 링크를 통해 보험대리점의 비교견적사이트로 이동하여 보험료 견적을 산출해 본 경우 보험대리점은 블로거들에게 견적 산출 건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견적 산출에서 나아가 실제로 보험계약 체결까지 성사된 경우에는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 체결 건당 추가 수수료를 블로거들에게 지급한 사안이다.

위 사안에 대하여 감독당국은, 보험대리점이 블로거들에게 보험계약 체결 건당 추

가 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해당 보험대리점은 기관경고 및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되었다.³⁾

이에 대하여, 인터넷 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 보험대리점이 운영하는 보험비교견적사이트를 안내하고 링크를 게시한 정도의 행위를 보험업법상 보험 모집 행위로 보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⁴⁾ 특정 보험 상품의 내용이나 계약 조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보험계약 체결을 유인한 것이 아니고 단지 불특정 다수인이 방문하는 블로그에 보험대리점의 보험비교견적사이트를 게시하고 안내한 정도라면, 이는 단순한 홍보 또는 광고 수준이지 보험 모집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최근에는 인터넷 포털과 ‘보험다모아’ 간 연계를 통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자동차보험료 비교·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보험회사의 다이렉트 홈페이지로의 링크까지 게시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⁵⁾

3) 금융감독원 검사결과제재 공시

(http://www.fss.or.kr/fss/kr/bsn/announce/openinfo_view.jsp?req_page=null&exam_mgmt_no=201300600&em_open_seq=1&SearchText=&StartDate=20150101&EndDate=20150108&openContent=)

4) 한편 위 보험대리점 사안과 관련하여, 인터넷 블로거들의 행위 자체를 보험 모집 행위로 본 것은 아니고, 다만 그 행위에 대해 보험대리점이 대가를 지급한 것을 규제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음. 즉, 보험업법 제99조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모집 행위’ 자체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모집과 관련한 행위’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는 것까지 모두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는 것임

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7. 8. 19), “「보험다모아」를 잘 모르시던 국민들께서도 보다 손쉽게 저렴한 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 I-2〉 보험다모아 자동차보험료 조회 절차

① 자동차보험 연관검색어 입력

② 자동차 보험료 비교해보기 클릭

① '다음'검색창에서 보험다모아 또는 자동차보험 연관검색어* 입력

*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료, 다이렉트자동차, 다이렉트자동차보험료, 인터넷자동차보험, 신규자동차보험, 보험다모아, 보험다모아 자동차보험료 등

② 검색결과 화면 우측 상단의 '자동차 보험료 비교해보기' 클릭

③ 개인정보 입력 → 보험가입 조건 및 할인특약 선택

④ 보험회사별 자동차보험료 비교 후 원하는 보험회사 선택

⑤ 보험회사 홈페이지로 이동(링크)하여 계약 체결 완료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7. 8. 19)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블로그에 보험대리점의 비교견적사이트 링크를 게시한 행위와, 인터넷 포털에서 보험료 비교·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험회사의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를 달리 취급하는 근거는 과연 무엇이나는 의문도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마케팅 방법과 채널들이 등장하면서, 보험 모집 행위와 그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구분은 더욱 모호해질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IT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제공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보험회사가 그러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가망 고객을 발굴하고 고객 정보를 확보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 구조 등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행위까지 보험 모집 행위로서 규율을 받는 것인지에 대해 그 범위를 확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집 자격이 없는 자가 이를 행하는 것이 금지

되고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가 모집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를 위탁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것도 금지되며,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가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핀바와 같이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 모집의 의미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정의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 사안에서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험 모집 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지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선 보험업법상 보험 모집 행위 등에 대한 규제 내용을 살펴보고,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관한 그 동안의 판례와 유권해석 사례들을 분석해본다. 아울러 보험업법상 보험 모집 행위 외에 기타 금융 관련 법규상 권유 행위 등에 관한 판례나 유권해석 사례들도 살펴보고, 나아가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관하여 참고할 수 있는 해외 사례를 조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보험 모집 행위와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구분하기 위한 주요 기준을 제안해보고,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보험 모집과 구분이 모호할 수 있는 사례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